

## (경상조사) 기간제근로자(통계조사원) 채용 연장 공고

통계청 순천사무소에서는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(통계조사원) 채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. 2. 20.  
통계청 순천사무소장

### 1.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

| 근무장소  | 모집구분          | 모집인원       | 계약방법 | 채용기간                  | 수당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순천사무소 | 기간제근로자(통계조사원) | 순천사무소 (1명) | 근로계약 | '25.03.10 ~ '25.04.29 | 73,170원 |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채용기간 변경될 수 있음 |

·순천사무소: 순천시 비행장길 18

### 2. 담당업무

| 담당업무 | 주요 담당업무  |
|------|--|
| 통계조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사무소 관할지역내 현지 조사업무 수행</li> <li>순천사무소: 순천, 광양, 여수, 구례</li> <li>가계동향조사 등 조사표 정리 및 표본대상처 관리 지원</li> </ul> |

### 3. 근로조건 및 보수

- 근무시간 및 형태 : 주 5일제(40시간), 1일 8시간(9시~18시) 근무
- 보수
  - 일 급 : 73,170원
  - 기 타 : 법정수당(정액급식비 140천원, 표본관리비 200천원, 명절휴가비(설날/추석) 각550천원)

### 4. 채용(모집)방법

- 1차 서류전형
 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
<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인원>

| 채용인원(분야별) | 서류전형 선발인원 |
|-----------|-----------|
| 1명        | 5배수       |

-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  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-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  -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  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  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-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
  -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(최대 10점)
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5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

| 5점  | 10점  |
|---|--|
|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         |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|
| 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| 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 |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|
|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전물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- 전물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                 |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|
|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        |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 |
|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|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|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4조 및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

| 5점   |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        |
|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                  |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|
|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               |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     |
|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기타 가점 (1차 전형에 반영)

- 자격증 점수(최대 5점)

| 자격증   | 점수 |
|---|----|
| -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                    | 5  |
| -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 활용능력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 | 3  |
| -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·3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|

- 기타점수(최대 5점)

| 항 목    | 점 수 | 내 용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저소득층   | 2   | - 기초생활수급자<br>- 차 상 위 계 층<br>- 한부모가족 세대주<br>※ 관련 증빙서류 제출 | ※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 |
| 다자녀    | 2   | - 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2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)<br>※ 주민등록등본 제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북한이탈주민 | 2   | - 북한이탈주민<br>※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애인    | 3   | -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5. 응시 자격요건(모두충족)

- 전산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-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
-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
- 「통계청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(「국가공무원법 제33조」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
-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

## 6. 전형일정

- 채용공고 : 2025. 2. 20.(목) ~ 2025. 3. 5.(수) 18:00
- 서류전형 : 2025. 3. 6.(목)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5. 3. 6.(금) 15:00 이후
- 면접일시 : 2025. 3. 7.(금) 15:30부터, 장소 순천사무소 2층 중회의실 예정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5. 3. 7.(금) 18:00 이후
  - 통계청 홈페이지 (<http://kostat.go.kr>) 공지사항에 공고

## 7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2. 20.(목) ~ 2025. 3. 5.(수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E-mail
  - 방문접수는 평일 09:00~18:00 내에 접수가능
  -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서류전형 접수에 반영되지 않음
  - 접수장소 : 아래 참조

| 담당자     | 주 소            | 전화번호,<br>e-mail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제팀 정혜수 | 전남 순천시 비행장길 18 | 061-750-6575<br>(jhs61@korea.kr) |

※ 응시원서 등 제출 후,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8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(붙임1 참조)
- 자기소개서 1부(붙임2 참조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붙임4 참조)
-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(붙임5 참조)
-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필수)
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운전면허증 1부(해당자에 한함)
- 표창 내역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)제외
- 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  - 채용서류(응시원서, 자격증명서, 기타 증명서류) 반환: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 합격자 공고일(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)로부터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, 20일간 신청을 받음
- 청구기간: 2025년 3월 14일 ~ 2025년 4월 3일

## 9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


【붙임2】

**통계청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 (A4 1장 이내 작성)**

※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, 개인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문구 자제(출신학교, 출생지, 친인척 관계 등)

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|
| 직 종   | 기간제근로자<br>(통계조사원) | 지원부서 | 순천사무소 | 응시번호 | 공란 |
| <b>【자기소개】</b>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|
| <p>- 작성방법) 지원동기, 본인의 장단점, 목표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, 개인 신상(출신학교, 출생지, 친인척 관계 등)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면 안됨</p>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|
| <b>【직무수행 역량】</b>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|
| <p>- 작성방법) 업무경험(경력) 및 직무관련 활동 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</p> <p>1. 업무에 필요한 경험, 경력, 또는 관련 지식 등</p> <p>2. 통계조사 수행, 문제 해결 능력, 적극적인 자세 등</p> <p>3. 공무수행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등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</p>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|
| 성 명: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(서명)  |      |    |

【붙임3】 (해당자만 제출)

|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. 이용기관 명칭 : 통계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이용 대상   | 행정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정보명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 | 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 |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 등·초본(다자녀 양육자)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 | 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 |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|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| 한부모가족증명서            |
| *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(☑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<p>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</p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주민등록번호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<p>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대상자    본인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   명    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인) |                     |
| 전화번호 :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


